

창원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가단1108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 고 1. 주식회사 B

2. C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현, 문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보경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D(이하 ‘D’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사이에 2021. 1.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1. 1. 27. 접수 제75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와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2021. 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조합은 E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1. 1. 15. 접수 제3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1차162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19,96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1. 3. 9.자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21. 3. 31. 확정되었다.

나. 그 후 D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1. 27. 피고 B에게 2021. 1.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E도 그 후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E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1. 15. 피고 C조합에게 2021. 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과 E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의 유일한 재산인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 담보로 제공하고, E의 유일한 재산인 E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피고 C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계약의 취소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이 피고 B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이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김해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D의 토지 및 건물 이외에도 차량이 존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 행위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가 피고 C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주택 역시 E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 행위 당시 E의 토지 및 주택이 E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거나 E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선순위로 2015. 11. 11.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주)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어 있었는데, 피고 C조합에 2021. 1. 15.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위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그보다 채권최고액이 다액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 사건에서, E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인해 채무자 E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